

#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(요약)

## [소득·세액 공제요건]

구분	공제요건			
	나이요건	소득요건 (100만원 이하)	동거 요건	
			주인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	
기본공제 (p.110)	본인	×	×	
	배우자	×	×	
	직계존속	60세 이상 (60.12.31. 이전)	○	△ (추가형편상 별거 허용)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00.1.1. 이후)	○	×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	×	○	×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
추가공제 (p.112)	장애인	×	○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(50.12.31. 이전 생)		
	부녀자(50만) 한부모(100만)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		
연금보험료 공제(p.117)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
신용카드 등(p.145)	×	○		
특별세액 공제 (p.177)	보장성보험료	○	○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
	의료비	×	×	
	교육비	×	○	
	기부금	×	○	
표준세액공제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

- ※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- ※ 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
- ※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아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
- ※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[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]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함,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

##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] p.145

구분	내용
공제 대상자	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연령제한 없음) ※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공제율	① 신용카드(15%) 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, 도서·공연비·박물관·미술관* 사용분(30%) *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③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(40%)
공제금액 계산	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* = 신용카드 + 전통시장사용분 + 대중교통이용분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* 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 ② 공제액 = ①의 사용액 × 15%(30%·40%) - 총급여액의 25%
공제제한	연 500만원 한도 (15년이상+고정금리 + 비거차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15년이상+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10년~15년미만+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)
증명 서류	· 주택금융진흥원 증명서 · 주민등록표등본 · (거주자 차입시) )금전 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 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주의 사항	· 주택차입금상환증명서 · 임대차계약서는 공제 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필요 · 법인,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
공제 제외	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초·중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*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④ 조세, 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 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 ⑥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(중고차는 가능) ⑦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

## [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]

구분	특별세액공제 항목	신용카드공제
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	취학전 아동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	그 외	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기부금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	기부금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
## 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세액공제	
공제 대상	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조 (p.137)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52조 4 (p.122)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 52조 5 (p.125)	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조의 2 (p.207)
기타	·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·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	·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근로자)가 · 국민주택규모주택을 · 대출기관, 보충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	·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·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액공제	·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· 국민주택규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
요건	· 청약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 주택청약종합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(월 15만원 이하)	· 주택소유권이전등기 · 입주일(경신, 이후 포함) 중 빠른날 ·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임대인의 · 계약으로 직접 입금 · 거주자 차입 시: 총급여 5천 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.1% 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	· 총급여 7천만원 (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 이하 ·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· 임대차계약증서의 ·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	
대상 주택	(09.12.31. 이전 가입자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(채소유사에도 공제 가능)	· 국민주택규모 ·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· 규모요건 삭제 ('14년부터) · 취득 기준시가 5억 이하 ('19년 이전 차입시 기준시가 4억 이하) (13년 이전 차입시 국민주택 규모 + 기준시가 3억 이하) · 오피스텔 제외	· 국민주택규모주택 · 주거용 오피스텔 · 주거용 고시원 * 부양가족명의의 임대계약 체결 주택 공제 가능
공제 금액	납입액의 40%	원리금 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	월세액의 10% (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 12%)
공제 한도	연 300만원 한도			75만원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90만원)
증명 서류	· 주택차입금상환증명서 · 주민등록표등본 · (거주자 차입시) )금전 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 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	· 임대차계약서는 공제 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필요 · 법인,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	· 무허가주택, 농가주택 포함 · 사업용, 판매목적 주택 포함 ·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 (상속 제외)	· 주민등록표등본 · 임대차계약서 사본 ·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

※ 2020.12.31.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

##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

■ 서비스 오픈 일정 2021.1.15. 이후 제공 예정

■ 제공되는 소득·세액 공제 항목

○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14종 자료 제공

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
○ 공동인증서 이용 홈택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간소화

■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

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

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

■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

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(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간소화)

② 홈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(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제공동의)

③ 세무서 방문 신청(제공동의 신청서 제출)

※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